

2021년도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요강

연구유학생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 대학에서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 연구 활동을 할 외국인 유학생(연구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 래

1. 연구 유학생의 정의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자, 비정규생으로 대학의 학부, 대학원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에서 과정의 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하는 자 및 이에 앞서 일본어 등의 예비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영리더프로그래밍 유학생 및 교원연수 유학생은 제외한다.)

2. 모집 분야

응모자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 또는 관련된 분야이고 일본의 대학원에서 연구가 가능한 분야로 한다.
단, 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이하 「재외공관」 이라 함)이 해당 국가별로 특정 모집 분야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부키나 일본 무용 등의 전통 예술, 공장에서의 특정 기술, 기능 등의 실무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학, 치학 및 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자는 일본 법률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 진료, 수술 등의 임상 연수에 종사할 수 없다.

3.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의 연구를 통해 일본과 자국 간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아래의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 (1) 국적 : 일본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일 것. 신청 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 대한민국에 생활 거점을 둔 일본 국적 소지 이중 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할 예정인 자는 대상으로 한다. 제1차 선고는 응모자가 국적을 선택한 대한민국 소재의 재외공관에서 실시한다.
- (2) 연령 : 원칙적으로 1986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단, 문부과학성이 국적국의 제도·사정(병역 의무·전란에 의한 교육 기회의 상실 등)에 의해 자격 연령 시기에 응모하지 못한 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적인 사정(경제 상황, 가족 사정, 건강 상태, 대학 또는 근무처의 사정 등)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력 : 일본 대학원의 석사 과정, 박사 과정(전기) 또는 박사 과정(후기) 중 입학할 희망하는 과정에 필요한 다음의 입학 자격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진 자. (입학 전까지 확실히 이 조건을 충족할 예정인 자도 포함)
 - (a) 석사 과정, 박사 과정(전기)
 - ① 외국에서 학교 교육 16년 과정을 수료한 자.
 - ② 외국 대학, 외국에 있는 학교 중 대학에 상당하는 학교에서 수업 연한이 3년 이상인 과정을 수료하여 학사 학위 상당의 학위를 받은 자.
 - ③ 이 외에 일본의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전기)의 입학 자격을 가진 자.
 - (b) 박사 과정(후기)
 - ① 외국에서 석사 학위 및 전문직 학위 상당의 학위를 수여한 자.
 - ②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이나 연구소(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포함)등에서 2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자로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이 외에 일본 대학원 박사 과정의 입학 자격을 가진 자.
 - (c) 박사 과정(의학, 치학, 수의학, 일부 약학 과정)
 - ① 외국에서 학교 교육 18년 과정을 수료한 자.
 - ② 외국 대학, 대학에 상당하는 학교에서 수업 연한이 5년 이상인 과정을 수료하여 학사 학위 상당의 학위를 수여한 자.
 - ③ 외국에서 학교 교육 16년 과정을 수료한 후, 대학·연구소 등에서 2년 이상 연구에 종사한 자로, 일본 대학의 의학, 치학, 수의학 또는 일부 약학 과정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자.
 - ④ 이 외에 일본 대학원 박사 과정(의학, 치학, 수의학, 일부 약학 과정)에 입학 자격을 가진 자.

※ (c)의 경우, 예를 들면 ①에서는 최종 과정이 의학, 치학, 수의학, 또는 약학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학별로 학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학할 희망하는 대학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학에 필요한 학력 조건을 확인할 것.
- (4)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본 입국 후에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5) 건강 :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에 따라, 일본에서 유학하는 데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6) 출발 시기: 일본 입국 시기는 10월 학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입국 시기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10월 학기: 원칙적으로 수송 대학이 정한 그 해의 각 학기 개시일(9월 또는 10월)로부터 전후 2주 사이에 수송 대학이 지정한 날에 입국이 가능한 자.
문부과학성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부과학성 또는 수송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입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을 무효로 함.
- (7) 비자 취득: 일본 입국 전에 국적국 소재 재외공관에서 「유학」 비자를 새로 취득하고, 취득한 「유학」 재류자격으로 입국할 것. 그러므로 이미 다른 재류자격(「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류자격을 「유학」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입국해야 함.
또, 국비 외국인 유학생 신분이 종료된 후, 다시 「영주자」,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신청하더라도 당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것. 신규 「유학」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8) 대상 외: 다음 항목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발 이후에 판명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함.
① 일본 입국 시 또는 장학금 지급 기간에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인 자.
② 문부과학성 또는 수송 대학이 지정한 기일까지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자.
③ 과거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재일본 입국 후 사퇴한 자도 포함. 단, 최종 장학금 지급일의 다음 달부터 장학금 지급 개시 예정일까지 3년 이상의 학업 또는 직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마지막으로 수급한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이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귀국 후 재적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자에 한함), 일한 공동 이공계 학부유학생, 영리더프로그램 유학생은 제외한다. 또, 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유학생 수송 촉진 프로그램 (Monbukagakusho Honors Scholarship for Privately-Financed International Students))는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제도 중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한 자. 여기에는 2020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 중 선발 결과가 신청자에게 아직 통지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2021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⑤ 신청 시 이미 「유학」 재류자격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중인 자, 그리고 자국에서 본 장학금을 신청할 때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중이거나 재적 예정인 자. 다만,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인 사비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신청 시에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에 수료해 귀국할 것이 확실하고, 재류자격을 「유학」으로 새로 취득한 후 일본에 입국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⑥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후, 일본 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수급할 예정인 자.
⑦ 「졸업 예정자」로 소정 기일까지 학력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⑧ 신청 시 이중 국적자로 일본 입국 전까지 일본 국적을 이탈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⑨ 일본 입국 후, 「유학」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한 자.
⑩ 신청할 때부터 일본 이외에서 장기간의 연구 활동(필드 워크, 인턴십 등)이나 휴학 등을 예정하고 있는 자.
⑪ 박사 과정 수료자 중,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 (9) 기타: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 학교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해 자국과 일본의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한편, 졸업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며 앙케이트 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물론, 귀국 후에는 재외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를 선발한다.

4. 장학금 지급 기간

- (1) 비정규생으로 재적하는 경우
2021년 9월^(주1) 또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일본어 등의 예비 교육(이하 「예비교육」이라고 함)이 필요한 자는 장학금 지급 기간의 첫 6개월을 예비 교육 기간으로 한다. 상기 이외 입국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별도로 정한다.
(주1) 장학금 지급을 시작하는 달이 2021년 9월인 경우는 수송 대학의 학기가 2021년 9월 1일에 시작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학기가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개시월이 2021년 10월이 된다.
- (2)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및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적할 경우: 일본 입국 시기와 상관없이, 각각의 정규 과정을 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하, 「표준 수업 연한」이라 한다. 각 과정의 표준 수업 연한은 「13. 진학 및 학위의 취득」을 참조)으로 한다. 예비 교육이 필요한 자는 별도로 6개월간의 예비 교육 기간을 가산한다.

5.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비정규생에서 정규생으로 대학원 정규 과정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 혹은 대학원 석사 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 과정에서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문부과학성의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단, 아래 사항에 유의할 것.

- ①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은 연장 신청이 승인되고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원의 정규 과정 시험에도 합격해 진학한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

- ② 비정규생 신분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 ③ 연장 신청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에 진학한 자는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사비 유학생으로서 진학 또는 재적하는 것은 가능)

6. 장학금 등

- (1) 장학금 : 재적하는 과정별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특정 지역에서 수학, 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 단위로 가산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① 예비 교육 기간 및 비정규생 월 143,000엔
 - ② 석사 과정 및 전문직 학위 과정 월 144,000엔
 - ③ 박사 과정 월 145,000엔
- (2) 교육비 :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 단, 정규생으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불합격한 해당 대학의 입학 검정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3) 여비
 - ① 일본 입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상기 「3. (6) 출발 시기」에 기재된 소정의 기간 중에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에게 여행 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에서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일반석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 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 내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품·별도 수하물 관련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국적국에 재외공관이 없어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거쳐서 일본에 입국하는 자, 또는 국적국에서 일본까지 직행편이 없는 자의 경우, 제3국 내의 경비와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고, 국적국에서 경유하는 제3국까지의 항공권 및 제3국에서 수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일반석 항공권은 문부과학성이 교부한다.
 -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하지만, 일본 입국 전에 국적국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를 「거주지」로 인정해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의 항공권을 마련한다.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사정에 의해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사정으로 상기 「3. (6) 출발 시기」에 기재된 소정의 기간 외에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② 귀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종료하고, 상기 「4. 장학금 지급 기간」에 기재된 장학금 지급 기간의 종료 월 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수용 대학이 통상 경로로 이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유학생의 도착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 내)까지의 일반석 항공권으로 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 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항공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국적국 내에서의 여비(항공기 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보험료, 휴대품·별도 수하물에 관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본인 사정 또는 하기 「7.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달 이전에 귀국할 경우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또한,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 (예: 일본에서 진학, 취직, 지속적으로 대학에 재적할 경우 등)와 일시 귀국하는 경우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7.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

아래의 경우, 문부과학성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여기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① 신청 서류에 허위, 부정한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 ③ 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 ④ 대학 또는 예비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퇴학·정학·훈고 및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제적되었을 때.
- ⑤ 대학 또는 예비교육기관에서 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 재류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경우, 또는 「유학」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된 것은 제외)을 지급 받았을 때.
- ⑧ 선발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 과정으로 진학했을 때.

8. 모집 및 선발 방법

모집부터 선발, 최종 선발 결과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9.~12. 항목을 참조 할 것.

졸업(수료)증명서는 학위취득 증명서 또는 졸업증서, 학위기 시본으로 대체 가능함(출신 대학 책임자의 확인 증명을 첨부할 것.

-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졸업증서 및 학위기 원본을 제출하지 말 것. 선발 전에 학부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해당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
- (주8) 학위논문 개요 등은 졸업 논문, 발표 논문 등의 요약으로 무관하나 학력 판정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유의할 것. 첫 페이지에 반드시 이름을 기재할 것.
- (주9)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인쇄하는 경우, 신청자의 이름 및 해당 자격 내용(레벨, 점수 등)을 포함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할 것.

10. 제1차 선고

- (1) 재외공관에서는 제1차 전형으로 서류 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 (2) 어학 필기시험은, 일본어와 영어로 반드시 전과목을 수험할 것. 일본어 시험 결과는 일본 입국 후의 일본어 예비 교육의 참고 자료로써 활용된다.
- (3) 각 선고에 해당하는 심사 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서류 심사: 최종 출신 대학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일 것. 또한, 전공 분야 및 연구 계획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것.
 - ② 어학 필기시험: 일본 대학에서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본어 또는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③ 면접시험: 일본 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본 대학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있는 자일 것. 또한, 일본어 또는 영어에 대하여, 일본의 지도교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있을 것. 다만,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 자는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일 것.
- (4) 제1차 선고의 결과 통지는 재외공관이 별도 지정하는 일시로 하고, 채택 여부의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 1차 선고에서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다.
- (5) 제1차 선고의 결과는, 제2차 선고와 대학 배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11. 입학 허가서(수락 내락서) 및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 제출

- (1) 입학허가서 유무는 최종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입학허가서를 1곳도 받지 못할 경우 선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차 선고 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희망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을 것.
- (2) 제1차 선고 합격자는 제1차 선고 결과 발표 후부터 2020년 11월 20일(금) [일본 현지 시간] 전 까지 희망하는 일본 대학과 직접 연락하여 대학원의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서의 입학허가서, 혹은 수락내락서(이하, 「입학허가서 등」 이라고 함)의 발행 의뢰를 할 것. 의뢰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① 신청서류 No.2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는 대학은 3개 대학까지 이다. 그러나 취득할 입학허가서는 최대 2통까지로 한다. 3통 이상 취득하지 말 것.
 - ② 일본 대학에 입학허가서 관련 의뢰 연락은 최대 2곳의 대학까지 동시에 가능하다. 동시에 3곳 이상 대학과 연락은 취하지 말 것. 다만, 1곳의 대학에서 수용 불가 회신을 받아, 답변 대기 중인 대학이 1곳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1곳의 대학에 추가로 입학허가서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2020년 11월 21일(토) [일본 현지 시간] 이후 일본의 대학에 입학허가서 발행을 위해 연락을 취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상기 「2020년 11월 20일(금)」은 대학이 입학허가서 등을 발행하는 기한이 아니므로, 대학에 회답을 재촉하지 말 것. 단, 회신 예정 시기를 지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함. 또한, 통상적으로 대학의 회신에는 한 달 정도 필요하므로 발행 의뢰 시 계획을 세워 의뢰할 것.
 - ⑤ 처음 대학과 연락을 취할 때에는 연구 지도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반드시 유학생 담당 부서에 연락할 것(문부과학성에서 해당 대학의 유학생 담당 부서에 제1차 선고 합격자가 입학 허가를 의뢰하는 연락이 갈 것이라고 사전에 전달해 두었으므로). 연락처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하는 유학생 담당 부서 연락처 일람에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⑥ 대학 및 연구자 검색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연구자 정보 웹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3) 대학에 입학허가서 등을 의뢰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 (a)와 (b)를 대학에 직접 제출 할 것.
 - (a) 재외공관에서 발행한 제1차 선고 합격증명서 (사본)
 - (b) 상기 「9. 신청서류」 중, ①, ③~⑥ 및 ⑧~⑪(아래 참조) 서류로, 각 서류에 재외공관이 확인 도장을 찍어 반환한 것(사본)

- | |
|--|
| ① 신청서
③ 전공 분야 및 연구 계획
④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성적 증명서
⑤ 모든 출신 대학 및 대학원 전체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학위취득 증명서
⑥ 재적 대학 또는 최종 출신대학의 장 또는 담임교원의 추천서
⑧ 학위논문 개요 등 (※재외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⑨ 어학능력증명서 (※재외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⑩ 현 직장 상사의 추천서 (※재외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⑪ 작품의 사진 또는 연주 녹음 전자 매체 등 (※재외공관에 제출했을 경우에만) |
|--|

그 밖에는 대학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 「②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 및 「⑦ 건강진단서」는 절대 제출하지 말 것.

기본적으로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이메일(email)로 송부할 것.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도 인정함.
 신청 서류 ①, ③~⑥, ⑧~⑪에 확인 도장이 없거나 서류의 글자 및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 1차 선고 합격 증명서(사본)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입학허가서 발행 의뢰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의할 것.

(4) 대학으로부터의 회신 현황을 수시로 재외공관에 보고할 것. 또한, 대학의 회신 현황을 바탕으로 최종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 및 취득한 입학허가서 등을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정한 매체로 제출할 것. 또한 수락 불가라고 회신한 대학은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입하지 말 것(어떤 대학의 연구과에서 '수락 불가'라는 회신이 있었다면, 그 대학의 다른 연구과를 기입하는 것도 불가함).

(5) 일본 입국 시기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학에 잘 확인할 것.

12. 제 2차 선고와 대학 배치

(1)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의 제 1차 선고 결과에 따라 제 2차 선고를 실시하고, 수용 대학이 결정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선발한다.

단, 신청자를 수용함으로써 대량 살상 무기 등의 확산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기술 제공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나, 신청자가 경제산업성이 작성한 외국 사용자 목록(End users list) 게재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이 사람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관련 기술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2) 대학 배치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입학허가서를 받은 대학이며,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재한 제 1희망 대학에서 제 3희망 대학 중에서 문부과학성이 배치 협의를 갖고 협의 결과, 대학의 승낙을 얻으면 해당 대학에 배치한다.

다만, 희망하는 대학에 국립 대학 및 공사립 대학이 포함된 경우, 수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예산 제약 등에 따라 국립 대학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므로 「배치 희망 대학 신청서」에 기재된 희망 순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대학원 정규 과정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생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정규 과정에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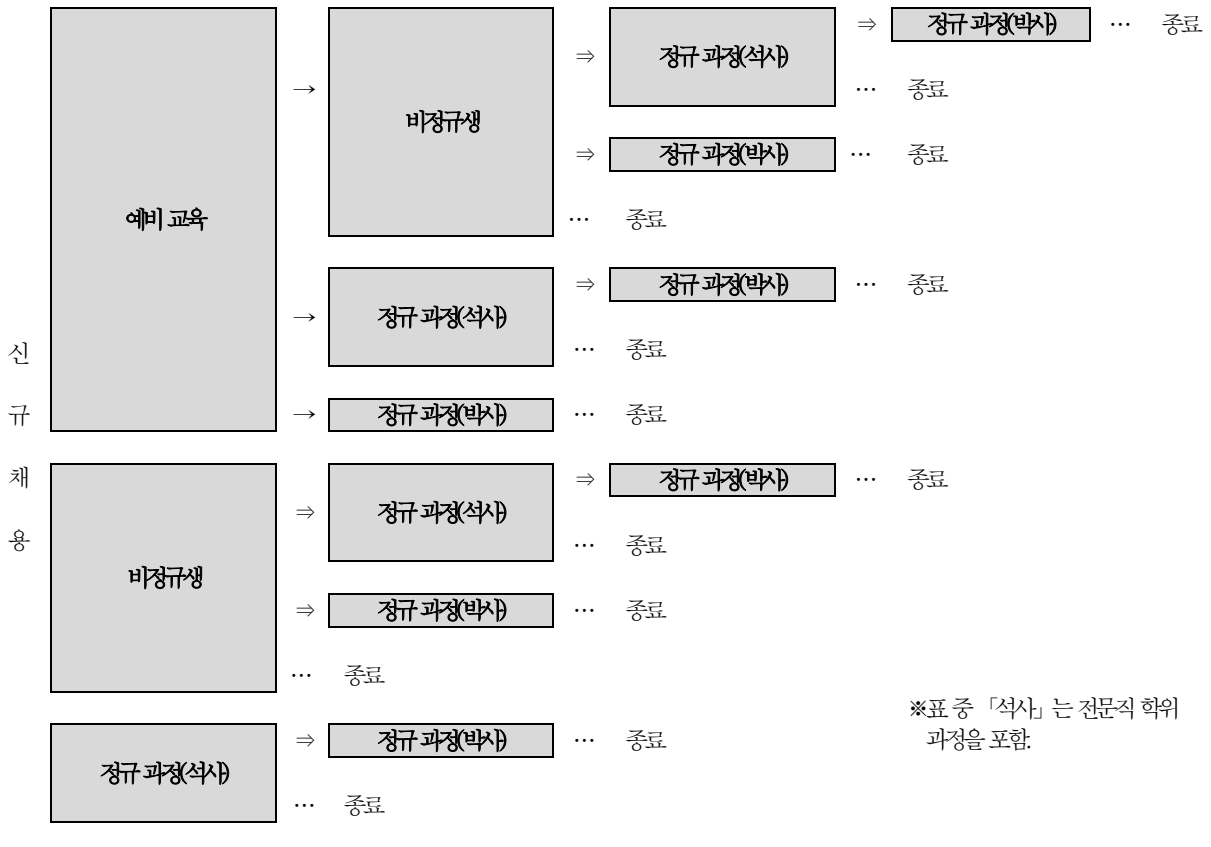
(4) 제 1차 선고의 어학 필기시험 결과에 근거해 대학에서 강의·실험·실습 등의 연구 지도를 받기 위한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수용 대학이 판단한 경우에는, 최초 6개월간 배치된 대학 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 등의 예비 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일본어 교육을 받는다. 일본어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배치 대학에 입학한다.

(5) 유학생이 본인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수용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 교육을 거치지 않고 정규생 또는 비정규생으로 대학에 직접 입학한다.

(6) 최종 선발 여부 결과 및 피선발자의 대학 배치 결과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략 2021년 6월 이후에 통지된다. 선발 불가 이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대학 배치 결과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13. 진학 및 학위 취득

국비 외국인 유학생(연구 유학생)으로서 진학이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1) 위의 표 중 「→」는 진학 시,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는 진학 시,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 연장 신청이 승인되고 대학원의 정규과정 시험에 합격하면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진학할 수 있다. (상기 「5. 장학금 기간의 연장」 참조)
- (2) 대학원 입학시험은 대학에 따라 다르나, 외국어, 전문 과목, 논문, 면접 등이 부과된다.
- (3) 일본의 학교 제도상, 대학원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석사 과정
대학 학부 교육 후의 과정이다. 표준 수업 연한은 2년이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 과정도 있다. 수료하면 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 ② 박사 과정
석사 과정 수료 후 3년 과정이다. 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의 경우, 학교 교육 18년 과정을 수료한 자 등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4년 과정이다. 수료하면 박사 학위가 수여된다.
 - ③ 전문직 학위 과정
전문직 대학원 과정이다. 표준 수업 연한은 2년이지만, 전공 분야에 따라 1년 이상 2년 미만 과정이 있다. 수료하면 석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된다. 또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3년제 법과 대학원 과정도 있으며, 수료하면 법무 박사(전문직) 학위가 수여된다.

14. 주의 사항

- (1) 일본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 간 법제도의 차이, 대학교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입국 후 장학금 수령하기까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필요하므로, 당장 필요한 생활 자금으로서 최저 미화 2,000달러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장학금은 일본 입국 후, 각자가 개설한 일본 우체국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본 계좌 이외의 계좌로는 장학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 (4) 일본 입국 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5) 일본 입국 후에는 마이넘버(사회보장번호)카드의 취득을 권장함.
- (6) 숙소에 대하여
 -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입실자 수에 제한이 있어 희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숙소에 관한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 ② 민간 숙소 등
유학생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학생 기숙사나 민간의 숙소에서 본인 부담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한, 부양가족(배우자나 자녀)을 동반하는 경우, 가족용 숙소의 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발된 자가 일본 입국 후, 숙소를 확보한 후에 가족과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선발된 경우, 선발된 자에 관한 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 대학, 연구과 학부, 전공분야, 재적 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유학 중의 지원, 유학 종료자의 사후 관리, 유학생 제도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선발된 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제외)는 일본 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 자료 등에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국 국비 외국인 유학생을 소개하기 위해 공표할 수도 있다.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선발될 때, 일본 정부 국비 외국인 유학생의 준수 사항을 정리한 서약서를 통해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8) 모집 요강 및 신청 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붙여 넣은 것이고, 영문 표현이 일본어 문장의 내용을 바꾸지는 못한다.
- (9) 이 모집 요강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 불명확한 점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재외공관에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10) 이 모집 요강에 정한 내용 이외에 국비 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주의: 대한민국 응모자의 경우 반드시 [별지] 2021년도 일본 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 모집 절차 및 선고 일정(연구유학생일한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여 응모할 것.**